

탄력관세제도의 운용현황

1. 머리말

彈力關稅制度는 행정부가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기본관세율에다 일정률을 가감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 關稅法 제정 당시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어 덤핑防止關稅, 보복관세 등 8가지가 제도화되어 있으나, 현재 할당관세, 긴급관세 및 便益關稅의 3가지 관세만이 운용되고 있다. 이중 특히 할당관세가 국내물가안정 및 수입확대의 도모를 위하여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긴급관세는 그 활용을 가급적 억제하여 왔다. 이에 따라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784개에 달한 반면 긴급관세 적용품목은 5개에 불과하다. 便益關稅의 경우에는 GATT 비회원국인 리비아, 알바니아 등 40개국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GATT 회원국과 관세상 동등한 대우를 하여 주고 있다.

한편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5개의 탄력관세중 조정관세 및 물가평형관세는 과거 일부 품목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현재 운용되지 않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相計關稅 및 보복관세는 교역국과

의 통상마찰을 우려하여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다.

2. 개 요

彈力關稅制度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국내산업보호 및 국내물자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¹⁾ 행정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彈力關稅 적용대상품목을 선정하고, 稅率 및 적용기간을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967년 關稅法 제정 당시부터 탄력관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관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탄력관세의 종류는 모두 8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할당관세, 긴급관세 및 편익관세 등 세가지이다. 나머지 5가지의 탄력관세중 調整關稅 및 물가평형관세는 과거에 운용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밖에 덤핑방지관세, 相計關稅 및 보복관세는 통상마찰을 우려하여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彈力關稅의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註: 1) 우리나라의 關稅는 基本關稅, 暫定關稅, 협정관세 및 탄력관세 등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기본관세는 우리나라 관세구조의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또는 변경이 가능한데 생활필수품보다는 사치품에 대해, 加工度가 낮은 품목보다는 가공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수준 등 산업발전단계에 비추어 基本關稅 적용이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과의 통상협정 또는 관세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쌍방간에 양허된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彈力關稅의 종류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關稅賦課 방법
덤핑防止關稅 (관세법 제10조)	-外國商品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때 부과	-정상가격과 덤핑價格과의 차액 범위내에서 추가로 부과
相計關稅 (관세법 제13조)	-輸出國에서 補助金 등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에 부과	-補助金 및 장려금 범위내에서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
報復關稅 (관세법 제11조)	-수출물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 불리한 취급을 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
便益關稅 (관세법 제14조)	-조약에 의해 便益을 받지 않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생산물에 賦課	-기정 외국과의 조약규정에 의한 편익의 범위내에서 관세편익 부여
緊急關稅 (관세법 제12조)	-국내산업보호, 특정물품의 수입억제, 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해 부과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까지 추가로 부과
調整關稅 (관세법 제12조의 2)	-수입자유화된 품목중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	-기본관세율에 관계없이 최고 100%까지 부과
物價平衡關稅 (관세법 제15조)	-특정물품 수급조절상 증대한 차질이 발생할 때 부과 -국제가격등으로 국내물가안정 저해시 부과 -계절에 따라 특정물품의 가격변동이 현저한 경우에 부과	-재무부고시 기준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부과 -기본관세율 이하 세율 부과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내를 가감한 關稅 부과
割當關稅 (관세법 제16조)	-물자수급 원활화를 위해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	-基本關稅率에 40%포인트내를 차감한 關稅 부과 -基本關稅率에 40%포인트내를 가산한 關稅 부과

3. 彈力關稅의 운용 현황

(1) 割當關稅

割當關稅制度(Tariff quota system)는 특정물자의 수급원활화를 위하여 수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일정수량의 범위내에서 基本關稅率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입억제의 목적으로 높은 할당관세를 적용한 사례는 없고, 다만 국내 필요물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基本關稅率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왔다. 특히 1987년에 들어서는 수출호조 및 노사분규로 일부원자재가 품귀현상을 나타내자 국내물가안정을 목적

으로 年中 3차례에 걸쳐 割當關稅 적용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어 금년들어서도 3차례에 걸쳐 割當關稅, 적용대상품목을 확대조치했는데, 1월 1일에는 물자수급 원활화 및 농어민 부담경감 등을 위해 농약원료, 비료원료, 면사등 356개품목(HS 10단위 기준)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이들 품목의 관세율을 평균 9.9% 포인트 인하하였다. 또한 2월 24일에는 일부原資材의 국제가격 상승 및 품귀에 따른 국내물가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석유화학원료, 건축자재 및 철강제품 등 117개품목(HS 10단위 기준)을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이들 품목의 관세율을 평균 7.5%포인트 인하하였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에는 원자재의 국내수급안정 및 대외 통상마찰 완화를 도모한다는 기본방침이래 原資材 뿐만 아니라 소비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였다. 즉 국내물자수

1988년중에 지정된 割當關稅 부과대상품목

主 要 内 容	
1988. 1. 1	- 割當關稅 적용 : 356개품목(HS 10단위기준) 코프라(10→5), 우지, 팜유(10→7), 코코스(10→7), 황인(10→7), 무수암모니아(10→2), 이산화망간, 염료 중간체, 폴리아미드(20→15), 슬라브(10→5), 농약원제(20→2) 등
2. 24	- 割當關稅 적용 : 117개품목(HS 10단위기준) 타일(20→10), 제압연용코일(저탄소강)(10→7), 중후판, 냉연강판(20→10), 메탄올(10→5), 석유코크스(10→7) 등 - 할당량확대 : 1개품목(HS 10단위기준) 생면사(16천톤→20천톤)
7. 1	- 割當關稅 적용 : 691개품목(HS 10단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原·副資材(391개품목) : 가성소다, 섬유용 플렉(20→15), 선철(5→2), 아마, 라미, 피마자(10→5), 원목(10→7), 고속도공구강선(20→10) 등 • 소비자재(300개품목) : 밀가루(20→10), 마아카린, 당면(20→15), 마요네스(30→20), 초코렛(30→20), 비타민제(20→15), 냉장고, 진공소제기, 카세트, 라디오, 녹음기, 세탁기(30→20) 등

註 : () 내의 單位는 %

급상 공급부족으로 수입이 불가피하고 국제가격 등귀로 국내가격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 원목, 선철, 천연고무 등 205개품목의 原·副資材에 대해서는 1989년도의 기본관세율 수준으로, 그리고 가격등귀 및 수급에로가 극심한 면사, 냉연강판, 중후판 등 186개품목에 대해서는 1989년도의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할당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품목들의 관세율을 평균 7.3% 포인트 인하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割當關稅 적용품목에서 제외된 소비자재에 대해서도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최근들어 가격이 상승하는 품목중 국민소비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탁기, 냉장고, 녹음기 등 家電製品과 의류 및 가방, 화장품 등 300개품목의 소비자재에 대해 금년말까지 輸入申

告되는 것에 한하여 내년도에 적용될 관세율을 미리 적용케 함으로써 이들 품목의 관세율을 평균 9.7% 포인트 인하하였다.

(2) 緊急關稅 및 便益關稅

緊急關稅(Emergency duties)는 국내경제여건상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한 불균형을 이루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하게 된다. 緊急關稅를 적용할 때에는 GATT 가입국들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등 여타 탄력관세보다 발동요건이 다소 까다로운데 부과대상품목은 1985년중 9개에서 점차 축소

緊急關稅 適用對象品目

	關 稅 率	緊急關稅 適用事由	施行期間
석 유 및 역 청 유	10%(5%)	국내소비 억제	87. 1. 1부터 계속
경 유 및 중 유	10%(5%)		
아 세 트 아 미 노 렌	25%(20%)	국내산업보호	88. 7. 1~88. 12. 31
페 로 망 간	15%(10%)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합금철산업 보호	/
실 로 코 망 간	15%(10%)		

註 : () 내는 基本關稅率

便益關稅 적용대상국가

	國	家
아 시 아	아프카니스탄, 부탄, 중공, 라오스, 몽고, 베트남	
中 東	이란,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大 洋 洲	나우루, 바누아투, 서사모아	
아 프 리 카	크모로, 지부티, 에디오피아, 기네, 리베리아, 소말리아	
美 洲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에쿠아도르, 과테말라, 혼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유 럽	알바니아, 안도라, 불가리아, 동독,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마리노, 소련, 바티칸	

되어 현재는 석유 및 역청유, 경유 및 증유, 아세트아미노펜, 페로망간, 실리코망간 등 5개품목에 대해서만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便益關稅(Beneficial duties)는 보다 긴밀한 통상관계의 유지,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와 관세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最惠國待遇를 함으로써 관세상의 편익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GATT 비회원국인 몽고, 리비아, 알바니아 등 40개국에 대해 便益關稅를 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품목은 여타 GATT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과 관세상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3) 調整關稅 및 物價平衡關稅

調整關稅와 物價平衡關稅는 과거에 적용된 사례가 있었으나, 긴급관세 또는 割當關稅 등의 적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현재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1984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조정관세는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防止한다는 측면에서는 緊急關稅와 동일하나 緊急關稅와의 차이점은 최근에 수입자유화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調整關稅를 지나치게 적용할 경우 수입을 자유화한 기본적인 의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조정관세 적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수입자유화된 후 3년이 경과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정관세 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상반기까지만 하여도 페로망간, 실리코망간, 석도강판, 등의 관과 대 및 정지식 컨버터 등 5개품목에 대해 調整關稅를 부과하였으나 이중 페로망간, 실리코망간은 긴급관세 부과로 대체하였으며, 나머지 3개품목은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 등을 감안하여 1987년 하반기부터 조정관세 부과를 정지하였다.

한편 국내물가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物價平衡關稅는 政府(財務部)가 특정품목에 대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과세가격이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 이하를 관세로 부과한다. 또한 기준가격이 고시되지 않더라도 특정물품의 국제가격이 폭등하여 국내가격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기본관세를 이하의 세율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농산물과 같이, 계절에 따라 가격차이가 현저할 때 성수기에는 낮은 관세를, 비성수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계절적인 가격변동을 축소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데 우리나라는 과거 양파에 대해서 物價平衡關稅를 부과한 적이 있으나 현재에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4) 덤핑防止關稅 및 相計關稅 등

현재 關稅法上 규정은 되어 있으나,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이제까지 한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는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防止關稅, 相計關稅 및 보복관세가 있다.

덤핑防止關稅(Anti-dumping duties)는 외국상품이 정

註 : 2) 正常價格 : 당해물품의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 가격임. 단, 통상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가장 높은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판매비 및 이윤을 합한 가격임.

덤핑價格 :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위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임.

상가격보다 낮게 국내시장에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正常價格과 덤핑價格²⁾의 차액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1904년 캐나다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오늘날 美國, EC 등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국내산업보호 수단으로 널리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相計關稅는 외국에서 장려금인 補助金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조금 등의 지급액과 동일한 규모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외국의 덤핑행위 또는 보조금지급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조사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등 덤핑방지관세 및 相計關稅를 부과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즉 外國의 부당염가판매 또는 補助金支給 등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해당업체 또는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피해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덤핑防止關稅 또는 相計關稅 부과를 요청하게 되면 財務部長官은 관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986년 이후 우리나라는 업계로부터 3건의 덤핑혐의제

소가 있어 이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다. 즉 1986년에 아세트알데히드, DCP 등에 대해 덤핑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日本으로부터 수입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DCP는 해당상품 수출국인 日本 및 臺灣이 가격인상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실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1987년에 들어서는 日本으로부터 수입되는 지퍼에 대해 덤핑提訴가 있어 조사(1987년 1월)를 하였으나, 국내산업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어 역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한편 報復關稅(Retaliatory duties)는 우리나라의 수출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복적으로 관세를 할증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7년 美國이 日本의 美·日半導體協定 위반에 대한 보복조치로 報復關稅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大統領令으로 報復關稅 부과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 ☞ 〈한국은행, 주간내외경제 1988. 9. 17호〉

□ 해외기술동향 □

소련, 수송부문의 석유대체연료 기술개발

소련은 수송부문의 석유대체연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소련은 액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항공기엔진과 천연가스와 경유의 혼합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엔진개발에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진전은 소련이 그동안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해 액화수소와 LNG 및 압축천연가스등을 이용하는 신형 내연기관 개발에 주력한 결과로 보인다.

그동안 소련은 外貨收入을 확보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너지소비 구조에서 천연가스의 소비비율을 높이는 한편 만성적인 제트연료 및 휘발유, 등유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송부문의 내연기관 기술개발에 주력해 왔다.

소련은 수송수단별 연료대체 기술개발에 주력해 온 결과 액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重型 항공기(Tu-154)를 개량완료했고, 가까운 시일내에 액화천연가스 동력여객기의 시험비행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관민협력으로 제트항공기 Tu-155를 개발하여 시험제작단계에 있다.

소련은 또한 육로수송부문의 대체연료 기술개발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소련의 중앙과학연구소와 KAMA 자동차공장은 공동으로 새로운 형태의 디젤엔진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련의 6차경제계획에는 LNG나 압축천연가스를 이용한 자동차연료 대체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소련은 오는 90년대까지 1백만대 이상의 LNG 및 압축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